

0108.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2021. 12.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SK스페셜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회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회사의 구성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라 한다),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준법지원인은 본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고 구성원은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구성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 ① 본 규정은 근무지를 불문하고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 ② 본 규정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예외적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및 실정에 따라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 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임명직, 선출직 상관없이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직 후보자
 - 정당 직원
 -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 공적 국제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예: IMF)
 -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 비정부기구(NGO)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공적 업무를 위임 받은 자
2. "거래상대방" 이라 함은 회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하며, 중개인/대리인(에이전트, 브로커, 컨설턴트 등), 사업파트너(조인트벤처 등), 협력회사(구매, 생산, 판매, 설계, 지원 협력사 등) 등을 포함한다.
3. "공무수행사인" 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4. "부정한 사업상 이익" 이라 함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 계약의 취득 또는 유지
 - 입찰, 영업기회 또는 경쟁사 영업 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
 - 인허가 승인
 - 관세, 세금, 벌금 부과액
 - 행정 또는 민사 소송
5. "금품 등" 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제공, 제안 또는 약속” 이라 함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약속하거나 제안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나 제안도 포함한다. 이 때, 제3자에게 지급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직자 등에게 전해질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 제안 또는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②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고, 필요 시 윤리경영부서에서 별도 정의한다.

제 2 장 준수사항

제5조 (일반사항)

① 원칙적 금지

구성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안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 요구하거나 수령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② 부정청탁 금지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 받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를 즉시 거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선물과 접대)

① 일반적 금지

1. 구성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과 접대 제공을 금지한다.
 - 법령에 의해 금지된 선물과 접대 (예: 마약류 등)
 - 호화, 사치성, 공개될 경우 난처할 수 있는 선물과 접대
 -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현금 또는 기타 현금성 선물과 접대
 -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대출 또는 사업관련 정보/권리 (예: 입찰, 인허가 등)
 - 기타 청탁금지법 및 다른 부패관련 법령(해외 부패관련 법령 포함)에 의하여 금지된 선물과 접대

② 허용 가능한 선물과 접대

1. 구성원은 아래 항목의 선물과 접대를 현지 법령, 관습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의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 식사, 접대
 - 강의료, 거마비 등 실비보전적 비용
 - 경조금품/화환 등 현지의 관습적 선물
(예 : 5만원 이하의 선물 또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화환 포함))
 - 행사용 성격의 선물(예: 메달 등)
 - 캘린더, 다이어리와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판촉용 선물
2. 제공이 가능한 선물 및 접대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지한다
-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
- ③ 구성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등에게 선물, 접대 및 경조사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부서와 위반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여행 및 출장)

① 일반적 금지

1. 구성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여행(출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은 제공할 수 없다.
- 여행관련 일당 및 여행경비의 현금 제공
 - 출장 목적과 무관한 여행, 여행경비 제공
 - 호화, 사치성 여행 제공

② 허용 가능한 여행(출장)

1. 여행(출장)의 제공은 사업 목적,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회사 또는 제3자가 주관하는 교육, 훈련에 참가시켜야 하는 경우
 - 기술, 운전, 프로젝트 등 관련 회의가 필요한 경우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회사 실사가 요구되는 경우
2. 교통비, 숙박, 식사 등 여행(출장) 경비는 서비스 제공자(호텔, 여행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대외후원금)

① 일반적 금지

- 구성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체에게 대외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다.
- 정치적 단체
 - 인허가와 직접 관련된 단체

② 허용 가능한 제공

대외후원금은 선의에 의해 자선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 가능하다.

제9조 (정치기부금)

회사는 공직 후보자, 국회의원에 대한 헌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기부금도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급행료)

- ① '급행료'는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 ② 구성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급행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 (이해상충 등)

- ① '이해상충'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 1. 구성원이 거래 상대방의 상당한 지분 소유
 - 2. 구성원이 거래 상대방의 이사 등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주요 임원과 친인척 관계
 - 3. 그 밖에 구성원의 업무 중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 기타 부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모든 경우
- ② 구성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인사 부서 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구성원이 인허가,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과의 혈연, 학연 기타 특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조 제2항과 같다.

제 3 장 인수합병

제12조 (M&A)

- ①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회사의 과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될 수 있으며, 인수된 회사가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법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인수한 회사에 대해 조기에 구성원의 준법교육, 점검/모니터링, 제3자 준법실사 등 회사의 내부 통제 및 준법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
- ③ 회사 구성원은 인수합병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준법통제

제13조 (승인과 기록관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은 회사 내 정해진 비용 집행 및 승인절차를 따라야 하고, 회사 구성원은 각종 거래와 지출에 대해 대상과 일시를 반영하여 장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구성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보고 등)

- ① 회사 구성원은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등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 받은 회사 구성원은 윤리경영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구성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신분의 취득이나 상실 등 변동에 관한 사항을 윤리경영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2.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탁금지법 준수규정은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